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64
----------	------

제출년월일 : 2007. 5.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관련법령의 개정 및 일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주차장관리의 효율성제고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현대화사업주차장에 대하여 처음 시설한 자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별도의 협약 기간으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5항).
- 나. 국가 또는 시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유료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이에 따른 수입감소 부분에 대하여 위탁료 감면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9항 및 제10항).
- 다. 2·3급지 공영노외주차장의 총주차면수의 30퍼센트 이내에서 노선여객 자동차를 제외하고 차고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 제1항).
- 라. 별표1의 제목 중 공영주차장의 유료를 명시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별표 1).
- 마.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별표 1 제5호다목).
- 바. 외교관, 외교사절 및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별표 1 제5호사목).
- 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가감기준의 시설물란에 외국공관을 삽입함.(안별표3 제2호).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주차장법」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4조, 제28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 2007. 4. 10. ~ 2007. 4. 30.(10일)
- 기타 참고사항**
 - 안산시주차장조례개정에 따른 검토보고서 : 별첨

안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주차요금)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공영주차장을 “공영유료주차장”이라 하며 그 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제4조의 제목·제1항·제2항·제2항 제1호·제8항,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1항 중 “공영주차장”을 “공영유료주차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관리경험 또는 능력(실적)”을 “관리경험”으로 한다.

제4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자사업추진에 따른 현대화사업 주차장에 대하여는 처음 시설한 자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별도의 협약기간으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시장은 수탁자가 국가·경기도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공영유료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⑩제9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금액은 주차면수 및 주차면적, 무료개방 및 사용일수, 납부할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산정한다.

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 중 “차고지”를 각각 “차고지 또는 주기장”으로 한다.

①시장 또는 수탁자는 공영유료주차장(공영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총 주차 면수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기장 확보 의무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차고지 또는 주기장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택시, 용달화물자동차, 2.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 1·2·3급지
2. 건설기계, 2.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노선여객자동차는 제외) : 2·3 급지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부대시설의 종류)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부대 시설의 종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로 하고, 같은 별표 제1호·제5호나목과바목·제6호라목 및 제9호 중 “공영주차장”을 “공영유료주차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 또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 자동차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퍼센트를 감면한다.
- 사. 외교사절, 외교관 및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자의 자동차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별표 3의 시설물란 제2호 중 “오피스텔”을 “외국공관 및 오피스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교통행정과
입안자	실 · 과장 직위 · 성명	교통행정과장 임승원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주차장관리담당 김장석
	담당자 성명 · 전화	김장석 (행정 2973)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주차요금) ①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p>	<p>제2조(주차요금)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공영주차장을 “공영유료주차장”이라 하며 그요금은 별표 1과 같다.</p>
<p>제3조 (주차장이용안내 표지) 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공영주차장</u>의 주차요금 등 이용에 관한 표지는 별표 2와 같다.</p>	<p>제3조(주차장이용안내 표지) ----- ----- <u>공영유료주차장</u> -----.</p>
<p>제4조 (<u>공영주차장</u>의 위탁관리) ①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u>공영주차장</u>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부정한 방법 또는 관리능력 부족으로 <u>공영주차장</u> 관리 위·수탁계약이 중도 해지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p> <p>1. (생략)</p> <p>2.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주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공공 시설물의 관리경험 또는 능력 (실적)이 있는 자</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u>공영주차장</u>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p> <p>도표 (생략)</p> <p>③ (생략)</p> <p>1. <u>공영주차장</u> : (생략) 2. ~ 3. (생략)</p>	<p>제4조(<u>공영유료주차장</u>의 위탁관리) ①----- ----- <u>공영유료주차장</u> ----- ----- <u>공영유료주차장</u>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관리 경험</u> -----</p> <p>②----- ----- <u>공영유료주차장</u> ----- -----</p> <p>도표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u>공영유료주차장</u> :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p>

<p>④ (생략)</p> <p>⑤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신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다만, 민자사업추진에 따른 현대화사업 주차장에 대하여는 처음 시설한 자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별도의 협약기간으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⑥~⑦ (생략)</p> <p>⑧ 수탁자는 <u>공영주차장내 차량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시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가 손해배상을 하며, 이 용자의 피해를 신속·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p>	<p>⑥~⑦ (현행과 같음)</p> <p>⑧ ----- <u>공영유료주차장</u> ----- ----- ----- ----- -----</p>
<p><신설></p>	<p>⑨ 시장은 수탁자가 국가·경기도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가 지원하는 행사로 인하여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신설></p> <p>제4조의2(차고지 제공 등)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에 한한다)총 주차면수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한 차고지로 제공할수 있다. 다만, 개인택시·용달화물·2.5톤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에 한한다.</p>	<p>제4조의2(차고지 제공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공영유료주차장(공영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총 주차 면수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기장 확보 의무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차고지 또는 주기장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택시, 용달화물자동차, 2.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 1·2·3급지 2. 건설기계, 2.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노선여객자동차는 제외) : 2·3 급지

②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와 차고지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월 5일까지 계약체결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주차요금 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제6조의2 (부대시설의 종류) 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관련)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1. ~ 4. (생략)

5. 주차요금의 감면은 다음과 같다

가. (생략)

나. 자가용 10부제 운행참여 스티카부착 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하여 부과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차 (800cc미만)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라 ~ 마 (생략)

마. 시책업무 추진목적으로 시장이 발행하는 주차권을 이용하는 자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40분 (500원)을 주차할 수 있다. 다만 40분 이후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공영유료주차장--차고지 또는 주기장-----차고지 또는 주기장-----.

③ -----차고지 또는 주기장-----.

제5조(주차요금 정수방법) ① 공영유료주차장---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부대시설의 종류) 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다.

[별표1]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관련)

1.-----
-----공영유료주차장-----.

1. ~ 4. (현행과 같음)

5. 주차요금의 감면은 다음과 같다

가. (현행과 같음)

나. -----
공영유료주차장-----.

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 자동차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라 ~ 마 (현행과 같음)

마. -----
공영유료주차장-----.

<신설>

6. (생략)

가. ~ 다. (생략)

라.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주차빌딩) : 연중 휴일
 없이 1일 24시간 운영

7. ~ 8. (생략)

9. 공휴일 및 일요일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주차빌딩)과 대부동 지역내의 공영 주차장중 시장이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공휴일 및 일요일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四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가감기준(제7조기준)

설치기준	물	설	시
(생 략)			1,(생 략)
시설면적 100m ² 당1대	제외한다.) 관람장을 제외한다.) 골프장,골프연습장 <u>오피스텔</u> 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 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 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문화 및 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 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2.
(생 략)			3.~ 8(생 략)

사. 외교사절, 외교관 및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자의 자동차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라. ----- 공영유료주차장(주차빌딩) : -----

7. ~ 8. (현행과 같음)

9.-----공영유료주차장-----

[三] 3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가감기준(제7조 관련)

설치기준	물	설	시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외국공관 및 오피스텔		-
(현행과 같음)			3. ~ 8(현행과 같음)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564
----------	------

발의년월일 : 2007. 5. .

발 의 자 : 도시건설위원장

□ 수정이유

- 공영유료주차장의 위탁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대화사업 주차장에 대한 위탁기간을 삭제하였으며, 공영유료주차장의 차고지 제공에 있어 주차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함.

□ 주요골자

- 가. 공영유료주차장의 위탁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관리경험 또는 능력(실적)이 있는 자로 확대함. (안 제4조제1항제2호)
- 나. 현대화사업 주차장에 대한 위탁기간을 삭제함. (안 제4조제5항)
- 다. 공영유료주차장의 차고지 제공에 있어 주차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 면적의 범위를 조정함. (안 제4조의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관리경험” 을 “관리경험 또는 능력(실적)” 으로 하고, 같은조제5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차고지 제공 등) ①시장 또는 수탁자는 공영유료주차장(공영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차면적의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기장 확보 의무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차고지 또는 주기장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면적은 “1 주차면적 11.5m²(2.3mx5m)x주차면수”로 한다.

1. 개인택시, 용달화물자동차, 2.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 1·2·3급지 주차장 주차면적의 30퍼센트 범위 이내
2. 건설기계, 2.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노선여객자동차는 제외) : 별표2의2가 정하는 주차장 주차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이내. 다만 별표2의2 외 2·3급지 주차장은 시설보완 전까지 제외한다.

별표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의2]

주차장현황(제4조의2 제1항제2호 단서관련)

급지	주차장명	위 치
2	제24주차장	원곡동 991-2
2	제25주차장	원곡동 994-1
3	한대앞역환승주차장	이동 622-3
3	중앙역환승주차장	고잔동 723
3	고잔역환승주차장	고잔동 679-1

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4조(공영유료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생략)</p> <p>1. (생략)</p> <p>2.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주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공공시설물의 <u>관리경험</u>이 있는 자</p> <p>② ~ ④ (생략)</p> <p>⑤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민자사업추진에 따른 현대화사업 주차장에 대하여는 처음 시설한 자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별도의 협약기간으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⑥ ~ ⑧(생략)</p> <p>제4조의2(차고지 제공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공영유료주차장(공영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총 주차 면수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기장 확보 의무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차고지 또는 주기장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1. 개인택시, 용달화물자동차, 2.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 1·2·3급지</p> <p>2. 건설기계, 2.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노선여객자동차는 제외) : 2·3급지</p>	<p>제4조(공영유료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원안과 같음)</p> <p>1. (원안과 같음)</p> <p>2. ----- ----- ----- 관리경험 또는 능력(실적)이 있는 자</p> <p>② ~ ④ (원안과 같음)</p> <p>⑤ ----- -----. <단서삭제></p> <p>⑥ ~ ⑧(원안과 같음)</p> <p>제4조의2(차고지 제공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공영유료주차장(공영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차면적의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기장 확보 의무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차고지 또는 주기장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면적은 “1주차면적 11.5㎡(2.3mx5m)x주차면수”로 한다.</p> <p>1. 개인택시, 용달화물자동차, 2.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 1·2·3급지 주차장 주차면적의 30퍼센트 범위 이내</p> <p>2. 건설기계, 2.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노선여객자동차는 제외) : 별표2의2가 정하는 주차장 주차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이내. 다만 별표2의2외 2·3급지 주차장은 시설보완 전까지 제외한다.</p>

<신설>

[별표2의2]

주차장현황(제4조의2 제1항제2호 단서관련)

급지	주차장명	위치
2	<u>제24주차장</u>	<u>원곡동 991-2</u>
2	<u>제25주차장</u>	<u>원곡동 994-1</u>
3	<u>한대앞역환승주차장</u>	<u>이동 622-3</u>
3	<u>중앙역환승주차장</u>	<u>고잔동 723</u>
3	<u>고잔역환승주차장</u>	<u>고잔동 679-1</u>